

「소화성궤양 및 위염」 외래 상병전산심사 점검기준 변경내역 안내

- 2012년 추구관리 결과 점검기준 초과청구 사례 유형 중심 -

※ 동 사례는 「소화성궤양 및 위염」 분야의 상병전산심사 추구관리 검토결과 수정·보완한 전산점검기준 중 심사기준 초과가 다빈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유형을 발췌한 내용임.

□ 검사·진료행위 일반원칙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의 가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

○ 산정지침 또는 고시 범위 초과하여 산정한 사례

연번	산정지침 등 심사기준	사 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침사현미경검사(B0041, B0042) ○ 요침사검사(B0043, B0044) 주: 요침사현미경검사로 재확인하는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위궤양」 단독 상병에 요침사현미경검사와 요침사검사를 동시 산정한 경우 요침사현미경검사는 불인정
2	○ 건강보험 요양 급여 행위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1) 각 분류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내시경을 이용한 경우 내시경료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소화불량」, 「결장의 폴립」 상병에 결장경검사, 결장경하 종양 수술 폴립 절제술 동시 산정시 결장경검사 불인정

연번	산정지침 등 심사기준	사 례
3	<p>○ 병리조직검사(C5911)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결장경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로 검사나 처치 등을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p> <p>가.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 검사 중 내시경하생검 및 병리조직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p> <p>- 내시경하생검(나854)과 병리조직검사(나550)는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음</p> <p>(고시 제2010-115호, 11.1.1시행)</p>	<p>○ 「위식도역류병」 단독 상병에 관련 검사 수기로 없이 산정한 병리조직검사(C5911) 불인정</p>

○ **수가산정 착오 사례**

연번	심사기준	사 례
1	<p>○ 2가지 이상의 수술시 수기로 산정방법</p> <p>1.. 동일 절개하에서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이란 2가지 이상 수술 중 소정금액이 높은 수술을 기준으로 함. 이 경우 '소정금액'이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각 분류항목에 기재된 금액을 말함.</p> <p>2. 한 절개부위에서 해당과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병변을 수술한 경우, 진료전문과목이 다르더라도 동일 마취하에 연속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를 산정함.</p>	<p>○ 「위 및 십이지장의 폴립」 단독 상병에 소명자료 또는 특정내역 기재(수술부위 기재) 없이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종양절제(Q7651) 200%(1*2*1) 산정시 100% 인정</p> <p>※ 장기당 시행한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은 소명자료 첨부 또는 특정내역(줄번호 특정내역 등)에 수술 부위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약제지급의 일반원칙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의 가 (2) 의약품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 초과하여 산정한 사례

요양급여기준	사 례
<p>○ carbamazepine제제</p> <p>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p> <p>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병인성 통증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01-28호, 2001.6.8 시행)</p> <p>※ 효능·효과</p> <p>1. 간질 : 정신운동발작, 간질성격 및 간질에 수반하는 정신장애, 간질의 경련발작</p> <p>2. 삼차신경통</p> <p>3. 조병, 조울병의 조상태, 정신분열증의 흥분상태</p>	<p>○ 「위염 및 십이지장염»,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상병에 투여한 carbamazepine제제(테그레톨정 등)의 경우 허가사항 및 고시 비교 불인정</p>
<p>○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경구제 (스티렌정 등)</p> <p>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p> <p>- 아 래 -</p> <p>○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p> <p>○ 다만,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p> <p>* 기동제 의약품 목록정비 조건부급여와 관련하여 스티렌정을 제외한 47개 제네릭 제품이 조건부급여를 취하함에 따라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만 급여 인정함 (고시 제2011-163호, 2012.1.1 시행)</p> <p>※ 효능·효과</p> <p>1. 다음 질환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p> <p>2.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p>	<p>○ 「십이지장궤양», 「두통」 상병에 NSAIDs [ibuprofen(부루펜정 등)]과 동시 투여한 스티렌정은 고시 비교 인정</p> <p>○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두통」 상병에 NSAIDs [ibuprofen(부루펜정 등)]과 동시 투여한 스타렉신정은 고시 비교 불인정</p>

요양급여기준	사 례
<p>○ α-lipoic acid(또는 thioctic acid)제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 적절히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예: gabapentin 경구제, pregabal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와의 병용투여시 통증치료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09-59호, 2009.4.1 시행)</p> <p>※ 효능·효과 :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의 완화</p>	<p>○ 「위-식도역류병」,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상병에 투여한 α-Lipoic acid 경구제(치옥타시드정 등)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p> <p>○ 「식도염」,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상병에 α-Lipoic acid제제(치옥타시드정 등)와 pregabalin 제제(리리카캡슐 등)를 동시 투여한 경우 고시 비교 pregabalin제제 불인정</p>

○ 2품목 이상의 병용투여 사례

식약청 허가사항 및 심사기준	사 례
<p>○ 경구소화제 2종 투여 2품목 이상의 의약품 병용 처방·투여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의 가 (6))</p>	<p>○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단독 상병에 레피딘정(레보설피리드), 돔페리돈정 동시 투여한 경우 약효기전 비교 1종 인정</p> <p>○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소화불량」 상병에 란프라캡슐30밀리그램, 넥시움정 20밀리그램 동시 투여한 경우 약효기전 비교 1종 인정</p>

○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초과하여 산정한 사례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 하여야 함

식약청 허가사항 및 심사기준	사 례
<p>○ midazolam 주사제</p> <p>※ 효능·효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술전 진정 2. 기관지경 검사, 위경검사, 내시경 검사전 의식하의 진정목적으로 단독 또는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 3. 다른 마취제 투여전 전신마취 유도목적 4. 중환자실 환자의 장기간 진정 목적 	<p>○ 「위염 및 십이지장염」, 「공황장애」 상병에 내시경 검사 없이 midazolam주사제 (미다졸람주사)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p>
<p>○ aceclofenac 제제</p> <p>※ 효능·효과 : 류마티스양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골관절염 및 견갑상완골의 관절주위염, 치통, 외상 후 생기는 염증, 요통, 좌골통, 회음 외측절개 수술 후 분만 후 비관절성 류마티즘으로 인한 통증</p>	<p>○ 「십이지장궤양」, 「급성 비인두염」 상병에 aceclofenac제제(아페민정)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p>
<p>○ revaprazan제제</p> <p>※ 효능·효과 : 위궤양·십이지장궤양의 단기치료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의 개선, 위궤양의 단기치료</p>	<p>○ 「위식도역류병」 상병에 revaprazan제제 (레바넥스정)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p>

○ 기타 약제 허가사항 안내

의약품은 허가사항(효능·효과 등)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함.

(※ 2012.8.23 현재 식약청 허가사항)

효능군	성분명 (상품명)	식약청 허가사항 (효능·효과)
111	ketamine HCl(케토민주 등)	1. 수술, 검사 및 외과적 처치시의 전신마취 2. 흡입마취의 유도 3. 기타 마취제 사용시의 보조
112	zolpidem(졸피아트정 등)	불면증
114	meloxicam(멜로칸캡슐 등)	1. 통증과 운동실조를 수반하는 관절염(퇴행관절염)의 급성악화시 단기간의 증상치료 2.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치료 3. 강직척추염의 증상치료
	dexibuprofen (프리메정 등)	1. 만성 다발성 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2. 관절증 3. 강직척추염 4. 외상 및 수술 후 통증성 부종 또는 염증 5. 염증, 통증 및 발열을 수반하는 감염증의 치료보조
	diclofenac sodium 주 (디클로페낙주 등)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강직성 척추염, 수술후·외상후 염증 및 동통, 급성통풍, 신 및 간산통
	piroxicam (피록시캠캡슐 등)	이 약은 다른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에 불응성이거나 효과가 불충분한 다음의 경우에만 투여한다. 1.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척추염 2. 만성에 한함 : 허리통증, 어깨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tramadol(타마돌주 등)	1. 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동통(각종 암 등) 2. 진단 및 수술후 동통

효능군	성분명(상품명)	식약청 허가사항 (효능·효과)
117	bupirone HCl(부스파정 등)	불안장애의 치료 또는 불안증상의 단기완화
	hydroxyzine HCl (유시락스정 등)	(경구 : 정제, 시럽제) 1. 수술전·후, 신경증에서의 불안, 긴장, 초조 2. 두드러기, 피부질환에 수반하는 가려움(습진, 피부염, 피부가려움증) (주사제) 1. 수술전 후, 중증의 신경증에서의 불안, 긴장, 초조 2. 두드러기, 피부질환에 수반하는 가려움(습진, 피부염, 피부가려움증) 3. 수술전 후의 구역, 구토 4. 알코올 금단증상
122	orphenadrine HCl (스락신정 등)	1. 특발성 파킨슨증 2. 기타의 파킨슨증(뇌염후, 동맥경화성) 3. 골격근 연축의 진통
	chlorphenesin carbamate (린락사정 등)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연축 : 요배통증, 변형성척추증, 추간판헤르니아, 척추골다공증, 척추분리전위증, 경견완증후군
123	bethanechol chloride (하이네콜정 등)	수술후분만후 기능성 요정체, 방광의 신경성 근이완증
124	tropium chloride (트로파정 등)	다음 질환의 평활근 연축에 수반되는 동통 - 위·십이지장 궤양 - 담낭, 담도질환 - 뇨로결석증
141	ebastine (에코스틴정 등)	알레르기성 비염·결막염·피부염, 만성두드러기
	loratadine (노라핀정 등)	알레르기성 비염(재채기, 코막힘, 가려움, 눈의 작열감),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chlorpheniramine maleate 복합제제(코벤시럽 등)	1. 감기 또는 알레르기성 및 혈관운동성 비염에 의한 다음 증상의 완화 :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물 2. 부비동염에 의한 비출혈의 일시적 완화

효능군	성분명(상품명)	식약청 허가사항 (효능·효과)
141	pseudoephedrine HCl 복합제제(액티피드시럽 등)	코감기, 알레르기성 및 혈관운동성 비염에 의한 다음 증상의 완화 : 재채기, 콧물, 코막힘
149	γ-linolenic acid (에보프림연질캡셀 등)	1. 아토피 습진으로 인한 가려움 완화 2. 당뇨신경병증
210	ginkgo biloba ext. + ticlopidine HCl (유크리드정250/80밀리그램)	다음 질환에 대하여 티클로피딘염산염 단독요법으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티클로피딘염산염과 은행엽엑스 제제의 병용요법에 대한 대체요법 1. 만성 동맥폐색증에 수반되는 궤양, 동통 및 냉감등의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 2. 허혈성 뇌혈관 장애 (일과성 뇌허혈발작 (TIA), 뇌경색)에 수반되는 혈전·색전의 치료) 3.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에 따른 혈전·색전의 예방, 치료 및 허혈성 제증상의 치료 4. 관상동맥내 스텐트 삽입시술 후 아급성 혈전의 예방
211	digoxin (디고신정 등)	(경구 : 정제, 엘릭실제)(주사제) 1. 울혈성심부전(폐부종, 심장천식 등 포함): 판막질환, 고혈압, 허혈성심질환(심근경색, 협심증 등), 선천성심질환, 폐성심(폐혈전, 색전증, 폐기종, 폐성유증)에 의한 것. 2. 심방세동·조동에 의한 빈맥, 발작성심방성빈맥 3. 기타 심질환(심막염, 심근질환 등),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저하증 4. 심부전 또는 각종 빈맥의 예방 및 치료
	aminophylline (아미노필린정 등)	(경구 : 정제) 1. 다음 질환의 기도폐쇄성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 기관지천식, 천식성기관지염,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2. 울혈성심부전, 심장천식(발작예방), 관상혈관장애, 신성부종

효능군	성분명(상품명)	식약청 허가사항 (효능·효과)
211	aminophylline (아미노필린정 등)	(주사제) 1. 다음 질환의 기도폐쇄성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 기관지천식, 천식성기관지염,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2. 울혈성심부전, 심장천식(발작예방), 관상혈관장애, 체인스톡스형호흡, 신성부종
213	hydrochlorothiazide (다이크로진정 등)	(경구 : 정제) 고혈압(본태성, 신성 등), 악성고혈압, 심성부종(울혈성심부전), 신성부종 간성부종, 월경전긴장증에 의한 부종, 부신피질호르몬, 페닐부타존, 에스트로겐에 의한 부종
	spironolactone (알닥톤필름 코팅정 등)	고혈압(본태성, 신성등), 원발성알도스테론증, 저칼륨혈증, 심성부종(울혈성 심부전), 신성부종, 간성부종, 특발성부종
214 259	terazosin HCl (하이트린정 등)	양성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장애, 고혈압(경증-중등도) ※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 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 방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04-81호, 2005.1.1 시행)
222	bromhexine HCl 주사제 (브롬헥신주 등)	1. 다음 질환에서의 객담배출곤란 : 급 만성기관지염, 폐결핵, 진폐증, 수술후, 기관지확장증 2. 기관지조영후 조영제의 배출촉진
232	cimetidine(시그나틴정 등)	1.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재발성궤양, 문합부궤양, 2. Zollinger-Ellison증후군, 3. 다음 질환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효능군	성분명(상품명)	식약청 허가사항 (효능·효과)
232	rabeprazole sodium (파라메트정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2. 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 3.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 완화 4. 위식도역류질환의 장기간 유지요법 5. Helicobacter pylori에 감염된 소화기 궤양 환자에 대한 항생제 병용요법 6. Zollinger-Ellison 증후군
	pantoprazol sodium sesquihydrate(as pantoprazol) (판토라인정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Helicobacter pylori에 감염된 위·십이지장궤양의 재발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2. 위궤양 3. 십이지장궤양 4. 중(中)~중(重)증의 역류성 식도염 5. Zollinger-Ellison 증후군과 기타 병리학적 위산 과분비 상태
	omeprazole(오메존캡슐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단기치료 2. 역류성 식도염 및 위식도 역류질환(GERD)의 증상(가슴앓이, 토출 등) 치료 3. 심한 역류성 식도염과 잘 치료되지 않는 소화성궤양의 유지요법 4. Zollinger-Ellison 증후군 5. Helicobacter pylori에 감염된 십이지장궤양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6.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십이지장궤양 또는 미란의 치료 7. 위·십이지장 병변의 병력이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장기투여 환자에서 NSAID 투여로 인한 위·십이지장궤양 또는 미란 및 소화불량증상의 예방 8. 역류성식도염의 재발방지
	esomeprazole(에소메드캡슐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식도 역류질환(GERD) 2. Helicobacter pylori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3. NSAID(COX-2 비선택성, 선택성) 투여와 관련된 상부 위장관 증상(통증, 불편감, 작열감) 치료의 단기요법 4. 지속적인 NSAID 투여가 필요한 환자 5. Zollinger-Ellison 증후군의 치료

효능군	성분명(상품명)	식약청 허가사항 (효능·효과)
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ntoprazole(판토록주 등) ▪ Omeprazole(로섹주 등) ▪ Esomeprazole(넥시움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중(中)~중(重)증의 역류성 식도염 2. Zollinger-Ellison 증후군 및 기타 병리학적 위산 과분비 상태 ▪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Zollinger-Ellison 증후군 환자중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의 단기요법 ▪ 1. 경구 요법이 적절치 않을 때 경구 요법에 대한 대체요법으로서 식도염이 있는 역류성 식도질환 및 식도 역류에 따른 증상이 심한 경우 2. 급성 출혈성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내시경치료 후 재출혈의 예방 <p>※ 1. Omeprazole, Pantoprazole</p> <p>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영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1일 80mg씩 3일 범위내에서 인정 ○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Zollinger-Ellison 증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₂ 수용체 길항 주사제(H₂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범위내에서 인정 <p>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영양급여를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2)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시 인정</p> <p>2. Esomeprazole</p> <p>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영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식도염이 있는 역류성 식도질환 및 식도역류에 따른 증상이 심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영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₂ 수용체 길항주사제(H₂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범위내에서 인정 <p>(고시 제2010-135호, 11.1.1 시행)</p>

효능군	성분명(상품명)	식약청 허가사항 (효능·효과)
255	clotrimazole(코마딘질정 등)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성 질염
	povidone iodide (포타딘질좌약 등)	1. 다음 경우의 국소치료: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성 질염, 비특이성 및 혼합감염에 의한 질염, 산부인과 수술전 처치 2. 살균성 질세정, 국소세척 및 방취(질세정액에 한함)
	neomycin sulfate (포리지질연질캡슐 등)	질칸디다증, 비특이성 세균성질염, 외음부염, 위 질환에 기인하는 화농성대하
	estriol +lactobacillus acidophilus (lyophilized)(지노프로질정)	1. 소독제 또는 항생물질로 국소 또는 전신치료 후 데데를라인균총의 정상화 2. 폐경기후의 질 세균총의 정상화(예로서 에스트로겐 대용제 사용할 때 병용요법제로 사용) 3. 가드넬렐라균 또는 칸디다 알비칸스에 의한 질염
259	propiverine HCl(비유평4정 등)	1. 하기질환 또는 아래 상태에 의한 빈뇨, 요실금 : 방광자극상태(만성방광염, 만성전립선염), 신경인성방광, 신경성빈뇨, 불안정방광 2. 절박뇨, 빈뇨, 절박성 요실금과 같은 과민성방광 증상
264	methylprednisolone aceponate (아드반탄크림 등)	습진(아토피피부염, 심상성습진 등)
265	clotrimazole(하네졸 크림 등)	1. 피부사상균, 효모, 곰팡이, 기타 진균에 의한 피부진균증 - 예 : 백선, 피부칸디다증, 어루러기 2. 상기 진균류에 중복감염된 피부질환
	ketoconazole(케토코나졸 크림 등)	(크림제)(겔제) 다음의 피부진균증 : 1. 백선 : 체부백선, 완선, 족부백선, 2. 피부칸디다증 3. 어루러기 4. 지루피부염
	terbinafine(라미실정 등)	1. 성인 1) 피부사상균에 의한 다음의 피부진균증 : 족부백선, 체부백선, 고부백선(완선) 2) 손·발톱 진균증 2. 소아 : 두부백선

효능군	성분명(상품명)	식약청 허가사항 (효능·효과)
339	sarpogrelate HCl(안플라그정 등)	만성 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등)에 의한 궤양, 동통 및 냉감 등의 허혈성 제증상 개선
	beraprost sodium(베라실정 등)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등)에 따른 궤양, 동통 및 냉감의 개선, 원발성 폐고혈압증
	cilostazol(실로스탄정 등)	1. 만성 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등)에 따른 궤양, 동통 및 냉감 등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 2. 뇌경색(심인성뇌색전증 제외) 발증 후 재발억제
399	lactulose cone.(모니락시럽 등)	(액제) 1. 변비 1) 만성변비 2) 영·유아 및 소아의 변비 3) 분만 후의 변비 2. 만성 문맥계 뇌증(Chronic PSE)에 있어서의 간성혼수의 치료 및 예방
629	itraconazole(한트라졸정 등)	- 칸디다성 질염, 어루러기, 피부사상균에 의한 체부백선, 고부백선(완선), 수부백선, 족부백선, 구강칸디다증, 진균성각막염, 손발톱진균증 - 다음과 같은 전신진균감염증 : 아스페르길루스증, 칸디다증, 크립토콕쿠스증(크립토콕쿠스 수막염 포함), 파라콕시디오이드미시스증
	balofloxacin (큐록신정 등)	단순성 요로감염증(방광염, 요도염 등), 골반내 감염증, 자궁경관염

※ 동 안내문에 기재된 약제의 경우 해당 상품명이외에 동일 성분의 약제는 동일하게 심사적용 되며,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의 약제도 허가사항 및 고시 등 기준범위 초과시 심사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